

#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전문직위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전문직위(군) 지정

법원행정처장이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전문직위군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1조의2제1항 신설)

### 나.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

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하도록 함(안 제51조의2제2항 신설)

### 다. 전문직위 전문관의 전보 제한

전문직위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을 4년의 범위에서 설정하되, 전보 제한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51조의2제3항 신설)

**라.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우대**

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가점 부여, 수당 지급 등 근거규정을 둠(안 제51조의2제4항 신설)

**마. 전문직위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위임**

전문직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51조의2제5항 신설)

**4.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**

붙임과 같음

**5. 신·구조문대비표**

붙임과 같음

##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1조의2(전문직위의 지정 등)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대법원 소속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,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,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.

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. 다만, 전문직위군 내에서 전보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「법원공무원 평정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, 전문직위 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

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전문직위 등의 지정 및 해제,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,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51조의2(전문직위의 지정 등)</u></p> <p>① <u>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대법원 소속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,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,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. 다만, 전문직위군 내에서의 전보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</u></p>

전문직위군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「법원공무원 평정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,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전문직위 등의 지정 및 해제,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,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3480-1937